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12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하여 기능이 감소된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
- 통합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잠업검사소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'잠업검사소' 로 하고,
- 사업소의 기능을 원잠종 생산 등 잠종시험, 생산기능과 잠종, 상묘의 검사와 잠견 검정기능을 통합규정 하는 한편,
- 소장의 직종을 '지방농업연구관' 에서 업무기능에 맞게 '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' 으로 규정하고,
- 부칙에서 '잠종장조례' 및 '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' 를 동시폐지하는 것임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(별첨)
- 지방자치법시행령 (별첨)
- 내무부 지침 (별첨)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

제1조 (설치) 우량잠종의 생산, 보급 및 잠종, 상묘, 잠건의 검사업무를 관장하고 도민의 잠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잠업검사소(이하 '잠업검사소' 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위치) 잠업검사소의 주소제지는 청주시 방서동 100번지에 두되 사업목적상 별개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.

제3조 (업무) 잠업검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우량 잠종 및 상묘의 생산, 검사
2. 중앙잠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
3.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업기술원의 양성
4. 잠종제조의 지도감독
5. 잠병 및 상묘병충해의 예방
6. 잠건의 기계검사
7. 잠종, 상묘, 잠건 및 생사의 생산비 조사
8. 기타 잠업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(소장) ① 잠업검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(초빙강사) 잠업기술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제6조에 의한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습생의 숙식제공) 강습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잠종장조례 및 충청북도농어촌
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	행	개	정
충청북도잡업검사소조례		충청북도잡업검사소조례	
제1조 (설치) 잠종 및 상묘검사와 잠건의 기계검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잡업검사소(이하 '잡업검사소'라 한다)를 둔다		제1조 (설치) 우량잠종의 생산, 보급 및 잠종, 상묘, 잠건의 검사업무를 관장하고 도민의 잠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잡업검사소(이하 '잡업검사소'라 한다)를 둔다.	
제2조 (위치) 잡업검사소는 청주시 영운동 152의 6 번지에 둔다.		제2조 (위치) 잡업검사소의 주소제지는 청주시 방서동 100번지에 두되, 사업목적상 별개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.	
제3조 (업무)잡업검사소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행한다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잠종 및 상묘검사 2. 잠종 제조의 지도 감독 3. 잠병 및 상묘병충해의 예방 4. 잠건의 기계검사 5. 잠종, 상묘, 잠건 및 생사의 생산비 조사 6. 기타 잡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		제3조 (업무)잡업검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량 잠종 및 상묘의 생산, 검사 2. 중앙잡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.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업기술원의 양성 4. 잠종제조의 지도감독 5. 잠병 및 상묘병충해의 예방 6. 잠건의 기계검사 7. 잠종, 상묘, 잠건 및 생사의 생산비 조사 8. 기타 잡업발전에 관한 사항 	
제4조 (소장) ①잡업검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업 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		제4조 (소장) ①잡업검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업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. ②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	
제5조 (공무원)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한다.		제5조 (공무원)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한다.	
제6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	제6조 (초빙강사) 잠업기술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	
		제7조 (수당) 제6조에 의한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
		제8조 (강습생의 숙식제공) 강습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.	
		제9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부 칙		부 칙	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 잠종장조례 및 충청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	